|  |  |  |
| --- | --- | --- |
| **<세무 행정재의 규칙>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국가세무총국 령 제39호  《<세무 행정재의 규칙>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이 2015년 12월 17일의 국가세무총국의 2015년도 제2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왕쥔  2015년 12월 28일    국가세무총국은 <세무 행정재의 규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19조 1항 (1)호를 “계획 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 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성 지방세무국 또는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2.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행정재의 증거에는 아래의 유형들을 포함한다.  (1) 서증  (2) 물증  (3) 시청자료  (4) 전자데이터  (5) 증인의 증언  (6) 당사자의 진술  (7) 감정의견  (8) 답사기록, 현장기록“  3. 제86조에 “화해, 조정 기간에는 행정재의 심리기한 계산이 정지된다.”란 내용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이 결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무 행정재의 규칙>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포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税务行政复议规则》的决定**  国家税务总局令第39号  　《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税务行政复议规则〉的决定》，已经2015年12月17日国家税务总局2015年度第2次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6年2月1日起施行。  国家税务总局局长：王军  2015年12月28日  　 国家税务总局决定对《税务行政复议规则》作如下修改：  　一、将第十九条第一款第一项修改为：“（一）对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向国家税务总局申请行政复议；对计划单列市地方税务局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可以选择向省地方税务局或者本级人民政府申请行政复议。”  　　二、将第五十二条修改为：“行政复议证据包括以下类别：  　　“（一）书证；  　　“（二）物证；  　　“（三）视听资料；  　　“（四）电子数据；  　　“（五）证人证言；  　　“（六）当事人的陈述；  　　“（七）鉴定意见；  　　“（八）勘验笔录、现场笔录。”  　　三、第八十六条增加一款，作为第二款：“行政复议审理期限在和解、调解期间中止计算。”  　　本决定自2016年2月1日起施行。  　　《税务行政复议规则》根据本决定作相应修改，重新公布。 |